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7. 24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 7. 17., 강명숙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19. 7. 18.
- 다. 상정일자 :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(2019. 7. 24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복지도시위원회 장덕준 의원

1) 제안이유

관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가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장 환경개선, 연료사용량 감축 등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2)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사업자 책무 구체화 및 이행사항 신설(안 제4조)
 -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

-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
-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
-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

3. 검토의견(신준호 전문위원)

1) 조례 개정 배경

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으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내 사업자에게 책임성을 강조하고 구 정책에 적극적 참여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도록 이행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임.

2) 주요 조문 검토

- 사업자로 하여금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(안 제4조제1호)
-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 개선하도록 유도(안 제4조제2호)
-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도록 규정(안 제4조제3호)
- 사업 활동시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
3)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책무를 규정하여, 구 대기환경보전

시책 추진시 민관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, 조문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바람직해 보임. 다만, 사업자에게 이행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설명이 다양한 채널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